위탁자산운용세칙

제 정 2006. 11. 6 개 정(1) 2014. 5. 28 개 정(2) 2014. 9. 5 개 정(3) 2014. 12. 12 개 정(4) 2015. 4.29 개 정(5) 2015. 6. 2 개 정(6) 2015. 8.19 개 정(7) 2015. 9.15 개 정(8) 2016. 2.29 개 정(9) 2016. 9. 1 개 정(10) 2019. 2.25 개 정(11) 2019. 11. 14 개 정(12) 2020. 4. 14 개 정(13) 2020. 10. 21 정(14) 2021. 7. 27 개 정(15) 2023. 8. 2 개 개 정(16) 2024. 6.25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)의 「위탁자산운용규정」(이하 "규정"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공사의 위탁자산운용 관련 제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운용조직 및 투자의사결정 체계

제1절 투자위원회

제3조(운영) ①위원장은 필요 시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투자위원회를

소집한다.

- ②투자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회의 3일전까지 심의· 의결 안건을 각 위원, 감사 및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 및 투자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서약서 등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4조(회의록) ①투자위원회 안건 관련 담당부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며, 투자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장은 회의록의 보관, 통보 등 투자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회의록에는 주요 심의 · 의결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재한다.
 - ③출석한 위원은 본인 발언에 대한 기재사항 등 회의록의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 - ④투자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장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회의록을 보관하고 투자 위원회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.

제2절 투자실무위원회

- 제5조(운영) ①위원장은 필요 시 또는 각 위원의 요청에 따라 투자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. 위원장은 영업일 기준으로 회의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명시하여 각위원, 준법감시인 및 감사실장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투자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.
 - ③위원장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해상충 또는 정보교류차단장치(Chinese Wall)등 의 이슈가 있는 위원의 경우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.
 - ④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 서약서 등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⑤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은 안건의 리스크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투자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 - ⑥투자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투자기획담당부서장이 하며,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- **제6조(회의결과의 보고 및 처리)** ①투자실무위원회 안건 담당 부서장은 회의록을 작성한다.
 - ②회의록에는 각 위원의 안건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내용을 기재한다.
 - ③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은 본인 발언에 대한 기재사항 등 회의록의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- ④안건 관련 담당부서장은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. 단, 심의안건이 최종 적으로 투자위원회에 부의되는 경우에는 사장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⑤간사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된 회의록을 보관하며, 투자실무위원회 회의결과의 조치사항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- ⑥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, 리스크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의견을 의견서에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.

제3절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

- 제7조(운영) ①위원장은 필요 시 또는 각 위원의 요청에 따라 전략적투자실무위원 회를 소집한다. 위원장은 영업일 기준으로 회의 3일전까지 심의·의결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, 준법감시인 및 감사실장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.
 - ③위원장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해상충 또는 정보교류차단장치(Chinese Wall)등의 이슈가 있는 위원의 경우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.
 - ④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 서약서 등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⑤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은 안건의 리스크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적투자실무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 - ⑥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투자기획담당부서장이 하며,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다.
- **제8조(회의결과의 보고 및 처리)** ①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 안건 담당 부서장은 회의록을 작성한다.
 - ②회의록에는 각 위원의 안건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・의결 내용을 기재한다.
 - ③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은 본인 발언에 대한 기재사항 등 회의록의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 - ④간사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된 회의록을 보관하며,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 회의 결과의 조치사항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 고한다.
 - ⑤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, 리스크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의견을 의견서에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.

- 제9조(외부 전문위원의 구성 및 위촉) ① 위탁자산운용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8항 내지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, 「정부기업예산법」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3. 경제학,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
 - 4. 경제학,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5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 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
 -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, 선정된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.
 - 1. 경력, 학력을 위조하거나, 위조한 이력이 있는 경우
 - 2. 위원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
 - 3.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한 경우
 - ③외부 전문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④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표 제1호 서식의 위원 위촉 숭낙서를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전통자산의 투자운용

제10조(전통자산운용 기본원칙) ①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, 공사와 위탁기관간의 자산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공사에서 전통자산 직접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와 전통자산위탁운용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투자가이드라인 (Investment Guidelines)을 부여한다.

- 1. 투자목적 및 성과 측정
- 2. 운용기준
- 3. 투자대상 자산 및 제한대상
- 4. 리스크 지표 설정 및 제약
- 5. 보고 의무
- 6. 기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전통자산 주식/채권현물을 거래할 경우 평가결과 및 계획에 맞게 브로커/딜러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예외사항 발생 시 준법감시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해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.
- ③전통자산 채권현물 거래는 복수호가를 원칙으로 하되, 채권운용담당부서장이 시장관행에 따라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및 거래유형의 경우 다 르게 정할 수 있다. 채권현물을 복수호가로 거래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 결과가 높은 등급의 브로커/딜러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예외사항 발생 시 준법감시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해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.
- 제11조(전통자산위탁운용사 선정 기본원칙) ①공사는 전통자산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투자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
 - 2. 투자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
 - 3. 사업의 안정성 및 평판
 - 4. 운용실적 및 수수료 수준
 - 5. 운용규모 및 특정자산군 또는 전략에의 집중도
 - 6. 고객서비스의 차별성
 - 7.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②전통자산위탁운용사 선정시 국내에 지점, 영업소 또는 법인을 설치한 경우 우대할 수 있다.
 - ③전통자산위탁운용사의 선정을 위한 심사는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전통 자산위탁운용사 다수의 후보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식(경쟁심사) 또는 전통자산 위탁운용사 후보 하나에 대하여 심사(건별심사)하는 방식을 적용한다.
- 제12조(전통자산위탁운용사 선정절차) ①전통자산운용담당부서(이 장에서 이하 "담당부서")는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으로 전통자산위탁운용사 선정계획, 외부 자문사 고용여부 등을 정한다.
 - ②담당부서는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으로 제안요청서 발송대상회사를 선정한 후 제안요청서를 발송하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.

- ③담당부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, 준법지원 담당 부서장, 법무 담당 부서장의 합의 및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으로 투자프로세스 진행여부, 현지실사계획, 현지실사 대상운용사 등을 결정한다. 단, 담당부서는 투자프로세스 진행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유관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- ④담당부서는 필요시 외부자문사를 고용하여 위탁운용사 선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.
- ⑤담당부서는 현지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 으로 심의 대상 운용사 선정 등 투자(안)을 투자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.
- ⑥담당부서는 제5항의 심의 대상 운용사 중 일부를 일정한 유효기간 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집행 할 수 있는 전통자산위탁운용사(이하 "예비 위탁운용사")로 부의할 수 있다.
- ⑦투자실무위원회는 담당부서의 현지실사 내용 등이 포함된 투자(안)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(안)을 심의한다.
- ⑧투자위원회는 담당부서의 투자(안) 검토보고서와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위탁금액한도를 설정하며, 설정된 한도 내에서 위탁운용사에 대한 자금집행은 투자운용부문장이 결정한다.
- ⑨기존 위탁운용사의 동일전략에 대해 위탁금액한도를 늘리고자 할 경우 본 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한다. 단, 담당부서는 필요시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으로 현지실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⑩현지실사를 하는 경우 현지방문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회의, Conference call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① 위탁운용사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선정 후 2년으로 하되, 선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 항목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투자운용부문장에게 보고한 후 자금을 집행한다. 단, 예비 위탁운용사의 경우, 선정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자금집행 사유 및 근거를 투자운용부문장에게 보고한 후 자금을 집행한다.
- 제13조(계약) ①담당부서는 자금 집행 시 최종 선정된 전통자산위탁운용사와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.
 - ②담당부서는 제10조의 투자가이드라인을 계약의 부속서류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- ③담당부서는 공사의 투자전략 변화 등 제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사장의 승인으로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4조(전통자산위탁운용사 운용성과 평가 및 관리) ①담당부서는 전통자산위탁운용

사 개별 및 전체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를 월별 및 반기별로 평가하며, 반기 단위로 담당부서의 현지실사방문 또는 위탁운용사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담당부서 방문 등 대면회의(화상회의 및 conference call 포함)를 실시한다. 담당부서는 이외같이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탁운용사로부터 일정한 형식의 정기보고서를 징구한다.

- ②담당부서는 월간 및 반기 보고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월간보고서는 월간투자분석회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운용성과 관련 구체적인 점검 기준 및 필요조치는 「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」 및 업무지침에 따른다.
- ③담당부서, 준법감시담당부서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위탁운용사의 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.
- ④준법감시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3호에 따른 준법감시담 당부서의 계약해지 권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1. 위반사항 확인
- 2. 시정 또는 변상요구
- 3. 필요시 해당 전통자산위탁운용사 경고 및 계약해지 권고
- ⑤담당부서는 위탁운용사가 투자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,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 우 이를 투자운용부문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취 하여야 한다.
- 1. 경영상의 변화
- 2. 재무상태의 중대한 변화
- 3. 사업방향의 변화
- 4. 주요 임원의 변동
- 5. 주요 운용인력의 변동
- 6. 법규 또는 규정의 위반
- 7. 공사에 제공한 정보의 중대한 오류, 누락 또는 허위진술 등
- ⑥그 밖에 전통자산위탁운용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지침으로 정 한다.
- 제15조(EFM Award) 공사는 투자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우수 자산위탁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4장 대체자산의 투자운용

- 제16조(대체투자운용 기본원칙) ①공사는 투자수익률 제고 및 수익률 원천의 다변화를 위해 대체자산위탁운용사를 선정하거나 직접투자 및 공동투자를 집행하여 투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.
 - ②직접투자 및 공동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한다.
 - 1. 해당 산업의 업황 및 향후 전망
 - 2. 산업내 경쟁관계 및 기술력
 - 3. 재무구조, 예상 현금흐름
 - 4. 투자구조 및 인수가격
 - 5. 경영진의 능력
 - 6. 공동투자자의 업종 내 전문성 등
 - ③대체자산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한다.
 - 1. 투자인력의 전문성 및 직원의 수
 - 2. 운용성과
 - 3. 운용자산 규모 및 증감추이
 - 4. 투명성, 유동성 및 리스크관리의 적정성
 - 5. 계열사를 포함한 조직규모
 - 6. 시장에서의 명성, 고객 서비스, 전략적 제휴 등
 - ④대체자산위탁운용사의 선정을 위한 심사는 위탁운용사 다수의 후보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식(경쟁심사) 또는 대체자산위탁운용사 후보 하나에 대하여 심사(건별 심사)하는 방식을 적용한다.
- 제17조(직접투자 및 공동투자 절차) ①대체투자운용담당부서(이 장에서 이하 "담당부서")는 투자(안) 개요, 현지실사 계획, 외부자문사 고용여부 등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, 준법지원 담당 부서장, 법무 담당 부서장 그리고 대체투자기획 담당 부서장의 합의 및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을 득한다. 단, 담당부서는 투자프로세스 진행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유관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또한, 투자대상이 정해져 있는 펀드 투자("프로젝트 펀드")의 선정절차는 본 조항을 따른다.
 - ②담당부서(또는 해외지사)가 현지실사를 수행할 경우 리스크관리담당부서 등 유관부서는 공동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외부자문사와 이를 진행할 수 있다. 현지실사는 현지방문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회의, Conference call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- ③투자실무위원회는 담당부서의 현지실사 내용 (수행시) 등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(안)을 심의한다.
- ④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투자실무위원회 종료시점까지 직접투자 등 중요 안건에 대해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, 그 심의결과를 투자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⑤투자위원회는 담당부서의 투자(안) 검토보고서, 투자실무위원회,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(개최시)의 심의결과 등을 검토한 후 투자(안)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⑥공동투자 투자금액이 1억불 미만일 경우 본 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 후 투자운용부문장(단, 투자금액 3천만불 이하는 대체자산운용담당본부장)의 승인으로 투자할 수 있다. 단, 동일펀드에 의한 공동투자의 합계액이 공사가 해당펀드에 약정한 원금을 초과할 경우 투자실무위원회 심의 및 투자위원회의 승인으로 투자를 결정한다. 또한 담당부서는 필요 시 현지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⑦공사가 본 조항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일상적인 수선·유지 목적의 추가 투자 또는 투자 검토과정에서 심의되고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집행이나 후속 투자 자산 편입을 위한 추가 투자 발생 시, 해당 추가 투자금 중 기존 승인 약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기존 약정금액의 20% 혹은 5천만불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 본 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생략하고,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 후 투자운 용부문장의 승인으로 투자할 수 있다.
- ⑧담당부서는 제3항 내지 제5항(제6항에 의하여 개최되는 투자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절차에 해당하는 투자(안)에 대하여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, 투자조건의 변화,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결렬 등의 사유로 이후 투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투자운용부문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해당 투자(안)을 종결한다. 단, 대체자산운용담당본부장이 승인권자인 투자(안)의 경우 대체자산운용담당본부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해당 투자(안)을 종결한다.
- 제18조(대체자산위탁운용사 선정절차) ①담당부서는 대체자산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작성하여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, 준법지원 담당 부서장, 법무 담당 부서장 그리고 대체투자기획 담당 부서장의 합의 및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을 득한다. 단, 담당부서는 투자프로세스 진행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유관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 - ②담당부서는 필요 시 외부자문사를 고용하여 위탁운용사 선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.
 - ③담당부서(또는 해외지사)는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으로 현지실사 대상운용사 를 선정하고 실사를 수행하며 현지실사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.
 - ④담당부서는 현지실사 이후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을 받

- 아 투자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운용사를 선정한다.
- ⑤투자실무위원회는 담당부서의 현지실사 내용 (수행 시) 등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(안)을 심의한다.
- ⑥투자위원회는 담당부서의 투자(안) 검토보고서, 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검토한 후 투자(안)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⑦기존 대체자산위탁운용사의 동일펀드에 추가 투자하거나 동일전략의 신규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생략한다. 단, 담당부서는 필요시 본 조 제1항 투자계획에 현지실사 계획을 포함하여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으로 현지실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⑧담당부서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 해당하는 투자(안)에 대하여 이후 투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제8항을 준용한다.
- 제19조(계약) 담당부서는 공사 내외의 법률자문을 받아 대체투자관련 계약내용을 협상하며, 사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. 단, 투자운용부문장 또는 대체자산운용담당본부장이 최종 승인한 대체투자 관련 계약의 경우 동 승인권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담당부서가 사장에게 보고한다.
- 제20조(모니터링 및 사후관리) ①담당부서는 관련부서의 협조 하에 대체투자 관련 계약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, 확인하고, 성과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한다. ②담당부서는 투자수익률 제고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며, 대체자산위탁운용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.
 - 1. 경영상의 변화(인수・합병 등)
 - 2. 재무상태의 중대한 변화
 - 3. 사업방향의 변화
 - 4. 주요 임직원의 변동
 - 5. 주요 운용인력의 변동
 - 6. 주요 투자내역의 변동
 - 7. 중요한 법령 위반 및 감독기구의 징계
 - 8. 투자대상 회사(펀드) 또는 이를 대신하는 제3자가 공사에 제공한 정보의 중대한 오류, 누락 또는 허위사실의 통보 등
 - ③담당부서는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월간, 반기 별로 사장에게 보고하며, 월간보고서는 월간투자분석회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 다.
 - ④그 밖에 대체자산위탁운용사 및 대체자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

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장 전략적 투자자산의 투자운용

- 제21조(전략적 투자 운용 기본원칙) ①공사는 위탁기관과 체결한 자산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전략적 투자를 집행한다.
 - ②전략적 투자에 대한 평가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한다.
 - 1. 해당 산업의 업황 및 향후 전망
 - 2. 산업내 경쟁관계 및 기술력
 - 3. 재무구조, 예상 현금흐름
 - 4. 투자구조 및 인수가격
 - 5. 경영진의 능력
 - 6. 투자대상 연관 국내기업 및 산업에 대한 전략적 의미
 - ③전략적투자자산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한다.
 - 1. 투자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
 - 2. 운용성과
 - 3. 운용자산 규모 및 증감추이
 - 4. 투자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
 - 5. 시장에서의 평판 및 고객 서비스 등
 - ④전략적투자자산위탁운용사의 선정을 위한 심사는 전략적투자자산위탁운용사다수의 후보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식(경쟁심사) 또는 전략적투자자산위탁운용사후보하나에 대하여 심사(건별심사)하는 방식을 적용한다.
- 제22조(전략적 투자 절차) ①전략적투자운용담당부서(이 장에서 이하 "담당부서")는 투자(안) 개요, 현지실사 계획, 외부자문사 고용여부 등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작성하며,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, 준법지원 담당 부서장, 법무 담당 부서장 그리고 투자기획담당 부서장의 합의 및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을 득한다. 단, 담당부서는 투자프로세스 진행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유관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 - ②담당부서(또는 해외지사)가 현지실사를 수행할 경우 리스크관리담당부서 등 유관부서는 공동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외부자문사와 이를 진행 할 수 있다. 현지실사는 현지방문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방 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회의, Conference call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- ③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는 담당부서의 현지실사 내용 (수행 시) 등이 포함된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(안)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④투자위원회는 담당부서의 투자(안) 검토보고서,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·의 결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투자(안)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⑤공사가 본 조항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일상적인 수선·유지 목적의 추가 투자 또는 투자 검토과정에서 심의·의결되고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집행이나 후속 투자자산 편입을 위한 추가 투자 발생 시, 해당 추가 투자금 중 기존 승인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기존 약정금액의 20% 혹은 5천만불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 본 조 제2항 내지 4항의 절차를 생략하고,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·의결 후 투자할 수 있다.
- ⑥담당부서는 제3항 내지 제4항의 절차에 해당하는 투자(안)에 대하여 급격한 시 장상황 변동, 투자조건의 변화,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결렬 등의 사유로 이후 투 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투자운용부문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해당 투자(안) 을 종결하다.
- 제23조(계약) 담당부서는 공사 내외의 법률자문을 받아 전략적 투자 관련 계약내용을 협상하며, 사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.
- 제24조(모니터링 및 사후관리) ①담당부서는 관련부서의 협조 하에 전략적 투자 관련 계약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, 확인하고, 성과관련 정보를 모니터링 한다.
 - ②담당부서는 투자수익률 제고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며, 전략적투자자산위탁운용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다.
 - ③담당부서는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월간, 반기 별로 사장에게 보고하며, 월간보고서는 월간투자분석회의 자료로 갈음할 수있다.
 - ④그 밖에 전략적투자자산위탁운용사 및 투자자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장 파생상품 거래

제25조(파생상품 거래 목적) 파생상품은 다음의 각호의 목적으로 거래한다.

- 1.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유사·관련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이거나 장래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 하 거나 감소시키려고 행하는 파생상품거래(이하 "헤지거래")
- 2. 현물과 선물 등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 상품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수익을 얻고자 거래(이하 "재정거래")
- 3. 기타 이외의 투자형태의 거래 (이하 "투자거래")

제7장 단기자금

제26조(운용원칙) 자금운용에 있어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대기성 자금(이하 "단기 자금")은 안정성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한다.

제27조(투자대상) 단기자금의 투자대상은 자산위탁계약서를 따른다.

제8장 외부자문사

- 제28조(선정기준 및 방법) ①공사는 자문사를 선정, 고용하여 투자의사결정, 매각 의사결정, 모니터링 등에 관해 자문을 받음으로써 투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.
 - ②투자운용담당부서 등 (본 장에서 이하 "담당부서")은 다음 각 호의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다.
 - 1. 재무자문사
 - 2. 회계/세무자문사
 - 3. 산업 및 기타 전문 컨설팅 회사
- 제29조(자문사 후보군 선정절차) ①담당부서는 자문사 후보군 검토대상 자문사를 선정한다.
 - ②담당부서는 투자운용부문장의 승인으로 제안요청서 발송대상 자문사를 선정하고 자문사 후보군 평가기준을 작성한 후 제안요청서를 발송한다.
 - ③담당부서는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자문사 후보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.
 - ④담당부서는 투자실무위원회 심의후 사장의 승인으로 외부자문사 후보군을 선

정하고, 자문사 후보군 관리부서에 통보한다.

- 제30조(고용절차) ①제29조에 따라 선정된 자문사 후보군 내에서 개별 투자건의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자문사를 고용한다. 단, 대상 자문사가 1인일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.
 - ②자문사 고용으로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발생시 자문사 고용부서는 해당 투자운용담당부서와 합의한다.
- 제31조(자문계약) ①자문사를 고용하는 경우, 담당부서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사장의 승인으로 자문관련 계약을 체결한다.
 - ②자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.
 - 1. 자문대상 및 범위
 - 2. 자문기간
 - 3. 자문비용
 - 4. 자문보고 및 산출물
 - ③담당부서는 자문사와 계약조건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계약협상이 결렬될 경우, 차상위 자문사를 고용할 수 있다.
- 제32조(모니터링 및 계약해지) ① 담당부서가 1년마다 자문사 후보군에 관해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자문사 후보군 관리부서에 통보하면 자문사 후보군 관리부서는 이를 취합해 사장에게 보고한다.
 - ② 담당부서는 자문사의 자문계약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제9장 의결권 행사

- 제33조(의결권행사 원칙) 공사는 위탁기관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.
- 제34조(의결권행사 대상) 공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과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. 다만, 보유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이거나 벤치마크를 일정한도 내에서 추종하는 것이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제35조(의결권의 행사) ①담당 투자운용부서는 투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운용부문장 및 외부운용사, 주주권리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- 1.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3이하를 보유하는 경우
 - 2.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20이하를 보유하는 경우
 - 3. 특수목적법인(SPC)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인 경우
 - ②자산을 재위탁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자산위탁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 단, 본 세칙 중 "제10조(투자대상) 7. 금융기관 대여(30일 이내 만기에 한한다)"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7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8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9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내규의 개정) 직무전결규정의 별표 중 투자 관련 계약 (2) 투자운용계약 체결 및 변경 일부(투자운용본부장이 의사결정하는 경우), 전통자산 간접운용 (3), 대체자산 대체투자운용 (5) 일부(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)는 본 규정과 같이

투자위원회에서 투자운용본부장으로 개정하고, 대체자산 대체투자운용 (9)는 본 규정 및 세칙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사장으로 개정한다.

부 칙(10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내규의 개정) 직무전결규정의 별표는 본 세칙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(11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2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3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내규의 개정) 직무전결규정의 별표는 본 세칙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(14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(15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(16)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

(별표 1) 위원 위촉 승낙서

위원 위촉 승낙서

본인은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설치된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위원의 위촉을 숭낙합니다.

- 1. 본인은 한국투자공사의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.
- 2. 심의과정에 있었던 일 및 그 결과를 누설하지 않는다.
- 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4. 심의대상 안건과 특수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한다.
- 5. 그 밖에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
※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민·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- 승낙인 성명 : (인 또는 서명)

- 소 속:

- 직 위:

- 생 년 월 일 :

한국투자공사 전략적투자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